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329
----------	-------

발의연월일 : 2026. 3. 9.

발 의 자 : 강선영 · 고동진 · 유용원
이만희 · 이달희 · 김미애
최수진 · 나경원 · 곽규택
김기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환 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 업무 관련 외국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거나,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 등을 위하여 외환거래 시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여러 나라에서 자유 · 민주주의 · 인권 · 법의 지배 등 보편적 가치의 확산을 위하여 인권침해를 이유로 한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 금지, 자산 동결, 입국 금지 조치와 같은 제재를 부과하고 있음.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보편적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여하여 다른 국가의 표적제재 대상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편적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 업무에 관한 외국금융기관과의 계약 체결 시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외환거래 시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및 제15조제2항제3호 신설).

법률 제 호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유지”를 “유지 및 보편적 인권의 보호와 증진”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평화 및 안전을 유지”를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보편적 인권을 보호·증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 ~ ④ (생략)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회사등(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는 업무에 관하여 외국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 ----- ----- ----- ----- <u>--유지 및 보편적 인권의 보호와 증진--</u> ----- ----- ----- ----- -----.
⑥ · ⑦ (생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지급절차 등) ① (생략)	제15조(지급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로부터 외국에 지급하려는 거주자·비거주자,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	② ----- ----- ----- ----- -----

나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려는 거주자에게 그 지급 또는 수령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 (생 략) 2. 국제 <u>평화 및 안전을 유지</u>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 ----- -----. 1. (현행과 같음) 2. -----<u>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보편적 인권을 보호·증진</u> ----- -----
---	---